

제319회 임시회
2013. 4. 24(수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3. 4. 24(수)
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3년 4월 5일
- 회부일자 : 2013년 4월 9일

다. 상정일자 : 2013년 4월 16일

-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강성조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·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(150만원 한도) 만료기간을 연장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공채 매입 면제 대상(안 제8조의 별표 2)
 -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기간 연장 ('12. 12. 31. → '14. 12. 31.)
 -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15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
- 시행 전('13. 1. 1. 이후) 등록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적용(부칙 안 제2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홍범희)
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면제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, 부칙 제2조에 2013년 1월 1일부터 조례 시행 전까지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토록 하는 것임
- 향후 면제기간 연장에 따라 예상되는 연간 매출 감소액은 10억 3,500만원으로 자동차 등록에 따른 총 채권매출액 대비 1.5%에 불과 하고, 기금의 실질 수입감소액도 연간 1천 35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사료되며,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미 모든 타 시도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타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150만원(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공채매입 면제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 제2호 타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별표2 공채의 매입면제대상 <제8조 관련>		별표2 공채의 매입면제대상 <제8조 관련>	
구 분	면제대상 및 내용	구 분	면제대상 및 내용
2. 사업 ·행위	<p>가.~카. (생략)</p> <p>타. 「<u>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<u>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등록. 단, 150만원까지만 면제함.</u></p>	2. 사업 ·행위	<p>가.~카. (현행과 같음)</p> <p>타. 「<u>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<u>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150만원(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</u>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공기업법

제19조(지방채 등) ① ~ ② <생략>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
2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(出捐)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
3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·수리·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
-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, 매입 대상별 금액, 채권등록 방법, 이율 및 상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<생략>
2. "환경친화적 자동차"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연료전지자동차,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.
 - 가.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 - 나.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
 - 다.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3. ~ 4. <생략>
5. "하이브리드자동차"란 휘발유·경유·액화석유가스·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(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 에너지를 포함한다)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